

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12. 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11.1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9.11.19

다. 상정일자 :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(2009.12. 2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임 경 선 토목과장

가. 제안이유

주관부서장이 용역설계 및 공사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일관성 및 전문성에 기여하고, 자문단의 간사와 서기를 현행 실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 (안 제명)

- 2) 현행 간사인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주관부서 과장”으로 하고, 서기는 “토목과장”을 “주관부서 팀장”으로 조정 (안 제11조)
- 3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상 표현 변경 및 용어 순화(안 전반)

3. 검토보고 (신승관 전문위원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용역설계 및 공사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일관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문단의 간사와 서기를 현행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,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며, 제명 등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「알기 쉬운 법령」 기준에 맞게 문구를 보완·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「수정가결」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